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2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강득구·송재봉·송기헌

김준형 • 전현희 • 박홍배

추미애 · 정혜경 · 전재수

김병주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 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 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 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수급자가 구직촉 진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생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2) ----------<u>정하</u>되, 「최저임 월(月) 단위로 정한다. 금법 | 제5조에 따라 월 단위 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 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 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 지원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다. <단서 신설>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 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